

수원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1가단52798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산
담당변호사 이진성, 박영규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2. 4. 14.
판 결 선 고 2022. 5. 12.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전라북도 진안군 C 임야 14,511㎡ 중 B의 1/3 지분에 관하여 2020. 6. 1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진안등기소 2020. 6. 12. 접수 제583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철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1. 28.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보증금액 200,000,000원, 보증기간 2018. 11. 28.까지(이후 2020. 11. 27.까지로 연장됨)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여, 소외 회사가 중소기업은행 영등포지점에서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원리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위 신용보증범위 내에서 보증을 하였다.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은행에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소외 회사는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완제일까지의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원금에 대한 보증료가 납부된 기한의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대위변제일 전날까지 적용보증료율에 원고가 정한 연율을 가산한 비율에 의한 추가보증료 및 ③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의 실행 또는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을 모두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B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2017. 11. 28.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서 제공받은 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중소기업은행에서 200,000,000원의 중소기업자금대출을 받았다.

라. 소외 회사는 2020. 11. 30. 위 은행에 대한 원금 연체로 인하여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결국 원고가 2021. 4. 28.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위 은행에 대출원리금 193,068,087원을 변제함으로써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마. 위 대출에 있어서 원고의 위 은행에 대한 보증채무는 보증기한 만료일의 다음날인 2020. 11. 28.부터 대위변제일 전날인 2021. 4. 27.까지 존재하였으므로, 위 기간 동안 잔존하는 주채무금에 대한 원고가 정한 보증요율 1.2%에 0.5%를 가산한 1.7%의 비율로 계산한 1,366,240원(=

190,000,000원 × 0.17% × 151/365, 10원 미만 절사함)의 추가보증료가 발생하였다. 또한 원고는 위 대출금채권에 대한 구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1,298,093원의 법적절차비용을 지출하였다.

바. B는 2020. 6. 11.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자신의 1/3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이를 원인으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진안등기소 2020. 6. 12. 접수 제5837호로 피고에게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증여계약은 B의 재산감소를 초래하여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의 소외 회사 및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피고와 B 사이의 증여계약 체결 후인 2021. 4. 28.(원고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위변제일) 성립하였으나, 위 증여계약 체결일인 2020. 6. 11. 당시 이미 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약정의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있었고, 소외 회사의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가까운 장래에 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실제로 가까운 장래인 2020. 11. 30. 신용보증사고의 발생으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결국 위 채권이 성립하기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므로, 이는 피고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B의 자력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의 E기관, 남양주세무서, 진안군청,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남양주시청에 대한 각 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B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적극재산: 이 사건 지분. 가액 약 4,565,160원(= m²당 공시지가 726원 × 14,511m² × 1/3)(나)

소극재산: 합계 4,208,084,000원

계열합계기관	발생일자	금액(원)
기업은행	2011. 1. 20.	350,400,000
F 은행	2009. 5. 15.	324,600,000
G 은행	2013. 3. 19.	149,611,000
신용보증기금	2000. 6. 25.	1,584,636,000
카카오뱅크	2017. 11. 28.	193,052,00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17. 9. 20.	274,880,000
H	2018. 11. 19.	9,528,000
I	2019. 8. 29.	76,419,000
신용보증기금	2020. 4. 20.	970,000,00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20. 4. 29.	274,880,000
합계		4,208,084,000

(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B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다60891 판결 참조), 이러한 증여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증여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증여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며(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12526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수익자의 선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증명책임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74843 판결 등 참조).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B가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B는 당시 이로써 자신의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4) 피고의 선의 항변

피고는, B에게 2019. 1. 31.부터 2019. 12. 10.까지 합계 1,811,370원을 대여하였는데 B에게 대여금의 상환을 요구하자 B가 채무변제의 목적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을 증여한 것이라는 취지로, B의 사해행위에 대하여 선의였다고 항변한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B에게 2019. 1. 31. 1,000,000원, 2019. 5. 20. 900,000원, 2019. 12. 10. 311,369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B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와 B가 형제 사이인 점,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는 점(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 참조), 이 사건 지분의 가액은 공시지가로만 계산하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대여금 액수의 2배를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에 대한 악의 추정을 반복하여 피고가 선의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와 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 6. 11. 체결된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진안등기소 2020. 6. 12. 접수 제583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철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대현